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7. 10. 31.(화) / 총 4매(본문 3, 참고 1)
담당 부서	기술정책과	담당자 : 과장 정채교, 사무관 유훈, 주무관 김종현 ☎ (044)201-3557, 3553
보 도 일 시		2017년 11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3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건설현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,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제정…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, ‘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(이하 환경관리비 지침)’을 제정한다.
 -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, 소음, 오·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.
 -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·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.
 - ※ (환경오염 방지시설) 세륜,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, 방음벽, 방진고무 등 소음·진동방지시설, 폐기물 처리 시설,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
 - 이에 따라,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(안)을 마련하여, 국토교통부 누리집 (www.molit.go.kr) 등을 통해 행정예고(10. 18.~11. 6.) 중에 있으며,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(roper@korea.kr)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또한, 공공 발주청, 건설업계,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11. 1.(수)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현 행	제 정 안
○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계상되어야 할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음	○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여 각각에 포함되는 항목 제시
○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불명확	○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

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 명확화

-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,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하여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,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.
 - 제정되는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. 이를 통해, **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**
- ※ (직접공사비)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, 운영,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 계상
 (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**요율로 적용**·계상

②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시

-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(제61조)에는 **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, 제출 시기,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.**
- 이에 따라, **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.**

- 또한,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·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. 국토부 관계자는 “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·관리 되어,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유훈 사무관(☎ 044-201-35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대표사례

< 비산먼지 방지시설 >



세륜시설



방진덮개

< 소음·진동 방지시설 >



가설방음벽



터널 방음·방진벽

< 폐기물 처리시설 >



폐기물 보관시설



폐유 저장소

< 수질오염 방지시설 >



오·폐수처리시설



오탁 방지막